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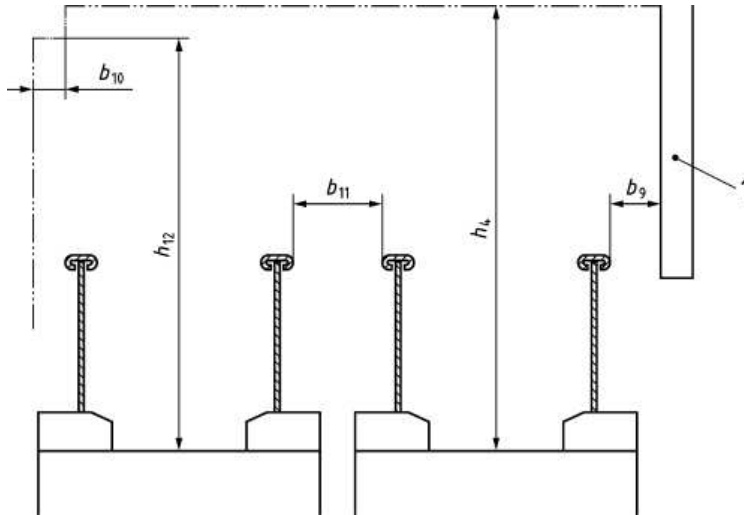
승강기 검사방법 표준화 결과

2021. 10.

□ 검사방법 표준화 (홈페이지 게시)

검사방법 표준화

No.	2021-0008
구분	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손잡이 끝단 400 mm 이내 건축물의 장애물 보호조치 관련
목적 / 배경	○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손잡이 끝단 400 m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의 장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보호조치의 검사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
관련법령 / 고시	<p>◆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 [별표24]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I.2.2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주위의 최소 자유구역은 그림 I.1과 같이 규정된다.</p> <p>틈새 높이 h4는 손잡이 바깥에서 높이 h12로 감소될 수 있으며, <u>에스컬레이터의 스텝 또는 무빙워크의 팔레트나 벨트로부터 측정된 높이 h12는 2.1 m 이상이어야 한다.</u></p> <p>손잡이 바깥 가장자리와 벽 또는 다른 장애물(그림 I.1의 b10 참조) 사이의 거리는 어떤 경우에도 80 mm 이상이어야 하고 손잡이 하부 모서리 아래(그림 6의 b12 참조)에서 수직으로 25 mm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적절한 조치에 의해 부상의 위험이 적어진 경우에는 이 공간이 작아지는 것이 허용된다.</p> <p>I.2.4 <u>건축물의 장애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.</u></p> <p>특히, 계단 교차점 및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그림 I.2와 같이 틈새의 수직거리가 300 mm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하되 부딪혔을 때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(스폰지 등)로 마감되어야 한다.(그림 5 및 그림 7의 h5 참조)</p> <p>다만, <u>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손잡이 외측 끝단에서 400 m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.</u>(그림 I.2 참조)</p> <p>막는 조치의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250 ~ 350 mm 전방에 부드러운 재질의 비고정식 안전 보호판이 설치되어야 한다.</p> <p>막는 조치 및 안전 보호판의 모서리나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마감되어야 한다.</p>



기호설명

1. 장애물(기둥 등)

주요 치수	항목	주요 치수	항목
$b_9 \geq 400 \text{ mm}$	I.2.4	$h_4 \geq 2,300 \text{ mm}$	I.2.1
$b_{10} \geq 80 \text{ mm}$	I.2.2	$h_{12} \geq 2,100 \text{ mm}$	I.2.2
$b_{11} \geq 160 \text{ mm}$	I.2.3		

비고 이 그림은 일정한 비율로 그려져 있지 않고, 단지 기준만을 설명한다.

[그림 I.1 — 건축구조와 에스컬레이터/무빙워크 사이의 간격]

참고자료

• JIS) 4.3.2(10)

핸드레일 외측끝단에서 수평 0.5 m 이내 및 디딤판에서 높이 2.1 m 이내에 기둥이나 보 등이 있거나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에 요철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신축성이 있는 재료(스폰지)로 보호조치를 하고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적 용

- 보호조치는 손잡이 외측 끝단에서 400 m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의 장애물에 모두 적용함
- 보호조치의 높이는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최소자유구역인 스텝 또는 팔레트나 벨트로부터 높이 2.1 m까지 적용(최소 손잡이 높이부터)

비 고

검사방법 표준화

No.	2021-0009
구 분	엘리베이터 승강장 JAMB 또는 삼방틀에 LCD 모니터 적용 관련
목적 / 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엘리베이터 승강장 JAMB 또는 삼방틀에 설치되는 LCD 모니터 등에 대한 검사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관련법령 / 고시	<p>◆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.1.2.1 승강로, 기계실.기계류 공간 및 폴리실은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.</p> <p><u>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배관, 전선 또는 그 밖에 다른 용도의 설비는 승강로, 기계실.기계류 공간 및 폴리실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설비는 설치될 수 있으나, 해당 설비의 제어장치 또는 조절장치는 승강로, 기계실.기계류 공간 및 폴리실 외부에 있어야 하며,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.</u></p> <p>나) 카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선 등 관련 설비 다) 카에 설치되는 모니터의 전선 등 관련 설비</p>
적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승강기 안전기준 6.1.2.1을 근거하여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승강기의 JAMB 또는 삼방틀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도 설치 가능. 단,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<p>(신규 승강기에 설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조사: 해당 기기 및 설비가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증명 ② 유지관리: 승강기 제조사는 승강로 내 유선 또는 무선전송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(적용범위 등) 및 품질보증서를 관리주체에 제공하고, 관리주체는 승강기 제조사 또는 유지관리업체를 통한 고장·수리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※ 고장 또는 수리 시 안전한 작업방법(과도한 개구부를 발생시키지 않는 등)에 대해 사용설명서에 포함 <p>(기존 승강기에 설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관리주체: 해당 기기 설치 시 안전성 등을 승강기 제조사로부터 확인을 받고 설치(해당 기기 및 설비가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증명 필요)

	<p>② 유지관리: 해당 기기의 제조사는 승강로 내 유선 또는 무선전송기기에 대한 사용설명서(적용범위 등) 및 품질보증서를 관리주체에 제공하고, 관리주체는 승강기 제조사 또는 유지관리업체를 통한 고장·수리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</p> <p>※ 고장 또는 수리 시 안전한 작업방법(과도한 개구부를 발생시키지 않는 등)에 대해 사용설명서에 포함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p>비 고</p>	<p>※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(안전검사 특례 대체기준)은 공단홈페이지-승강기정보-법령자료 97 "승강기 내 유·무선 전송기기" 참조</p> <p>※ 해당 내용은 승강기의 JAMB 또는 삼방틀에 설치되어 승강로에 전선 등 관련설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며, 별도 건축물의 승강로 외벽에 설치되는 모니터 및 전광판 등은 해당되지 않음</p>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검사방법 표준화

No.	2021-0010
구 분	건축물 비상통화장치 설치 관련
목적 / 배경	○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상통화장치의 검사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
관련법령 / 고시	<p>◆ 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」 [별표22] 엘리베이터 안전기준</p> <p>16.3.3 카 내에 갇힌 이용자 등이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(경비실, 전기실, 중앙관리실 등) 2곳 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. 다만,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가 2곳 미만인 경우에는 1곳에만 설치될 수 있다.</p> <p>또한,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내의 장소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 등 해당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외부로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비상통화장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.</p>
적 용	<p>○ 관리 인력의 상주 장소가 1개임을 소명하는 경우 1개소로 인정</p> <p>- 소명방법: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로 적용</p> <p>① 콤비시스템 특이사항에 소명내용 입력 후 관리주체(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건설사) 서명 받아 저장</p> <p>② 관리주체 또는 건설사에 별도의 양식으로 소명 받아 비상통화장치 검사항목에 사진 촬영 후 저장</p> <p>※ 건축물에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가 없더라도 건축물에 최소 1개의 통화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</p>
비 고	<p>※ 관리인력: 건축물을 직접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 주체로 단순 세입자 등은 포함하지 않음</p> <p>※ 상주: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,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장소에 해당함</p>

검사방법 표준화

No.	2021-0011
구 분	교체 설치검사 시 종전검사기준 적용 관련
목적 / 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승강기의 교체 설치검사 시 건축물의 구조변경 없이는 현행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종전 검사기준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
관련법령 / 고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◆ 「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」 [부칙]<행정안전부고시 제 2020-73호, 2020.12.31.> 제2조(판정기준의 경과조치)제1항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「승강기 안전검사기준」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<u>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(종전의 완성검사, 정기검사,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)</u>을 적용할 수 있다.
적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승강기의 교체 설치검사 시 현행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 건축물의 구조변경 없이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(도면, 사유서, 검토서 등) 제출을 통해 종전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, 종전 기준은 현행 안전기준 직전 검사기준을 의미함○ 종전 기준도 만족할 수 없는 경우, 그 이전 검사기준을 적용함○ 단, 최종 종전기준 적용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
비 고	

검사방법 표준화

No.	2021-0012
구 분	교체 설치검사 시 승강장문 문턱지지대의 재사용 관련
목적 / 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전부교체 설치검사 시 승강장문 문턱지지대의 재사용은 불가함○ 다만, 건축물의 문턱지지대 제거 시 건축물의 강도 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 대해 검사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관련법령 / 고시	<p>◆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3조(승강기 교체의 범위)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.</p> <p>1.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(이하 "엘리베이터"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(이하 "휠체어리프트"라 한다)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</p> <p>가. 균형추(均衡錘) 나. 기계대(機械臺) 다. 완충기 지지대(支持臺) 라. 주행안내 레일 마.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. 출입문의 문틀</p>
적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원칙적으로 문턱지지대의 재사용 불가함- 다만,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<p>(적용조건)</p> <p>① 건축물 구조변경 없이는 불가한 경우만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1차 측 브라켓 제거 시 건축물의 강도 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(건축물의 1차 측 브라켓 외 사용 불가) <p>② 기존 1차 측 브라켓 + 보강(필수)을 통하여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강도를 만족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강도 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불가 <p>③ 제출서류</p> <p>가) 건축물 구조변경 없이는 불가함을 증명하는 검토 서류 나) 보강되는 문턱지지대에 대한 강도계산서 다) 제조사 설계와 동일하게 설치됨을 증명하는 확약서(제조사 직인 포함)</p>



<사진 예시>

비 고